
플랫폼 유상운송 ON-OFF 공제 약관

2024. 02. 28.



배달서비스공제조합

플랫폼 유상운송 ON-OFF 공제 보통약관

플랫폼 유상운송 ON-OFF 공제는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공제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이륜자동차 공제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공제계약자와 공제조합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플랫폼 유상운송 ON-OFF 공제의 구성

제1조 용어의 정의

제2조 플랫폼 유상운송 ON-OFF 공제의 구성 및 가입대상

제2편 플랫폼 유상운송 ON-OFF 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제4조 피공제자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6조 피공제자 개별적용

제7조 지급공제금의 계산

제8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운전자신체사고

제9조 보상하는 손해

제10조 피공제자

제11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2조 공제금의 종류와 한도

제13조 지급공제금의 계산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4조 보상하는 손해

제15조 피공제자

제16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 지급공제금의 계산

제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공제자의 공제금 청구

제18조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20조 제출 서류

제21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2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23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24조 제출 서류

제25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3장 공제금의 분담 등

제26조 공제금의 분담

제27조 공제조합의 대위

제28조 공제조합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29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30조 공탁금의 대출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공제계약의 성립

제31조 공제계약의 성립

제32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33조 설명서 교부 및 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4조 청약의 철회

제35조 공제기간

제36조 사고발생지역

제2장 공제계약자 등의 의무

제3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38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제39조 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제3장 공제계약의 변동 및 공제료의 환급

제40조 공제계약 내용의 변경

제41조 공제계약의 취소

제42조 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제43조 공제계약자의 공제계약 해지·해제

제43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제44조 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45조 공제료의 환급 등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46조 약관의 해석

제47조 공제조합의 개인정보이용 및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제48조 피공제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제49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제50조 분쟁의 조정

제51조 관할법원

제52조 미 납입 공제료의 공제

제53조 준용규정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 대인배상 I 지원금 특별약관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별표 3> 과실상계 등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별표 5> 운전자신체사고 지급 기준

<부 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플랫폼 유상운송 ON-OFF 공제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공제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4. **무보험자동차:** 피공제자동차가 아니면서 피공제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공제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 가. 자동차공제 「대인배상II」나 보험계약이 없는 자동차
 - 나. 자동차공제 「대인배상II」나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공제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공제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공제의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 라. 피공제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5.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6.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8.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 의무공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를 말합니다.

10.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1.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2. 피공제자: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공제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공제자 : 공제조합과 업무제휴를 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배달대행 운전자 (*1) 를 통해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나. 운전피공제자 : 기명피공제자와 배달대행계약 이후 기명피공제자를 위해 배달대행 지시를 받아 피공제자동차로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공제조합이 승인한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운전자(*2)를 말하며, 기명운전자(*2)와 지정운전자(*3)로 구분합니다.

(*1) '배달대행 운전자'란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배달대행 업무계약을 맺고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와 피공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일정금액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기명운전자'란, 피공제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공제조합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인증에 성공한 운전자를 말하며, 피공제자동차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지정운전자로 봅니다.

(*3) '지정운전자'란, 피공제자동차의 소유자가 지정한 운전자를 말하며 기명운전자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지정운전자로 봅니다.

13. 피공제자동차: 운전피보험자가 기명피공제자와 배달대행 업무 계약을 맺고 배달대행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이 공제계약을 청약할 때 공제조합에 알리고 공제조합이 승인한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14. 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피공제자의 부모: 피공제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나. 피공제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다. 피공제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5.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 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인명보호장구: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
- 다.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2)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3)

(*1)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라이더자켓·팬츠·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2)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3)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6.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발생 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7. 마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플랫폼 유상운송 ON-OFF 공제의 구성 및 가입대상)

- ①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플랫폼 유상운송 ON-OFF 공제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운전자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4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피공제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공제(이하「대인배상 I」이라 하며, 책임보험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나.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운전자신체사고」	피공제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공제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③ 플랫폼 유상운송 ON-OFF 공제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과 업무제휴를 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배달대행 운전자를 통해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2. 위 '1.'의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배달대행 업무를 수탁 받은 배달대행 운전자 (해당 배달대행 운전자가 이용하는 피공제자동차는 보통약관 제1조 제9호의 의무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2편 플랫폼 유상운송 ON-OFF 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대인배상」에서 공제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공제조합이 정한 기간 (*1) 에 피공제자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하는 중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피공제자자동차의 다른 공제계약(보험계약 포함)의 대인배상 I(정부보장사업 포함)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에서 공제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를 활용하여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공제조합이 정한 기간(*1)에 피공제자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중 생긴 피공제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1)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공제조합이 정한 기간'이란 배달대행 운전자가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배달대행 업무를 요청하여 배정을 받은 시점부터 해당 배달대행 업무 종료를 알린 시점까지를 말하며, 이 외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4조(피공제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피공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기명피공제자
2. 기명피공제자를 위해 피공제자자동차로 배달대행 업무를 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이 승인한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운전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공제계약자 또는 기명피공제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공제자 이외의 피공제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공제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7. 피공제자가 피공제자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 받지 아니하고 피공제자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공제자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중 생긴 손해

9. 피공제자의 배달대행서비스 수행과정을 이탈하여 피공제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10. 제3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 제3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운전자가 배달대행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공제자의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2. 운전피공제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배상책임이 있는 피공제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4. 피공제자동차가 피공제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공제자의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운전피공제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공제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공제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4. 피공제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배달 물품 포함)에 생긴 손해
 5.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 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정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공제조합이 제6조(피공제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6조(피공제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공제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정하는 공제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7조(지급공제금의 계산)

- ① 「대인배상」에서 공제조합은 이 약관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서 '이 공제계약을 제외한 다른 자동차공제계약의 대인배상 I(책임 보험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에서 지급될 수 있는 공제금을 초과한 금액에 '비용'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공제금	=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1)에 따라 피공제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 공제계약을 제외한 다른 자동차공제계약의 대인배상 I(책임보험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에서 지급될수 있는 공제금'을 초과한 금액	+	비용
-----------	---	---	---	----

「대물배상」에서 공제조합은 이 약관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공제금으로 지급하며,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지급 공제금	=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공제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공제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④ 제1항의 「대물배상」 '공제액'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8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① 피공제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공제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공제자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공제조합이 「대인배상」 또는 「대물배상」에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공제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 : 1사고당 1억원
 2. 「대물배상」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공제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공제금
 -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공제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 ②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공제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공제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운전자신체사고

제9조(보상하는 손해)

「운전자신체사고」에서 공제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공제조합이 정한 기간 (*1) 에 피공제자가 피공제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2)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공제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공제자가 피공제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공제자동차의 낙하

(*1)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공제조합이 정한 기간'이란 배달대행 운전자가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배달대행 업무를 요청하여 배정을 받은 시점부터 해당 배달대행 업무 종료를 알린 시점까지를 말하며, 이 외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피공제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0조(피공제자)

「운전자신체사고」에서 피공제자는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제4조(피공제자)와 같습니다.

제1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운전자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2. 상해가 공제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2. 피공제자동차 또는 피공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

- 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7. 피공제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 8. 피공제자동차에 탑승한 동승자가 죽거나 다친 손해
- 9. 음주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 10 피공제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고의 손해
- 11 '별표 5 운전자신체사고 지급기준'의 '가 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상의 10급부터 14급까지의 상해
- 12. 공제자의 배달대행서비스 수행과정을 이탈하여 피공제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13. 제3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 제3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운전자가 배달대행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제12조(공제금의 종류와 한도)

공제조합이 「운전자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공제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사망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운전자신체사고 지급기준'의 '가 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상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5 운전자신체사고 지급기준'의 '나 후유장애 구분 및 공제가입금액표' 상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후유장애 공제가입금액에 해당하는각 장애등급별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3조(지급공제금의 계산)

「운전자신체사고」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① 위 12조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boxed{\text{지급 공제금}} = \boxed{\text{실제 손해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보통약관 '<별표1~4>의 공제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으로써 '<별표3>의 1.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

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공제(보험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 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다만, '3'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사망공제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후유장애 공제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공제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공제조합이 사망공제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공제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공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인 기명피공제자가 본인의 사망공제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4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공제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공제조합이 정한 기간(*1)에 피공제자가 피공제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생긴 무보험자동차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2)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공제조합이 정한 기간'이란 배달대행 운전자가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배달대행 업무를 요청하여 배정을 받은 시점부터 해당 배달대행 업무 종료를 알린 시점까지를 말하며, 이 외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공제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공제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5조(피공제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공제자는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제4조(피공제자)와 같습니다.

제1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공제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공제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3. 상해가 공제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공제자동차 또는 피공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8. 피공제자가 피공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상해를 입은 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나. 피공제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공제자의 사용자 또는 피공제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공제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10. 피공제자동차에 탑승한 동승자가 죽거나 다친 손해
11. 음주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12. 피공제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고의 손해
13. 공제자의 배달대행서비스 수행과정을 이탈하여 피공제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14. 제3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 제3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운전자가 배달대행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제17조(지급공제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공제금은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 을 공제한 후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boxed{\text{지급 공제금}} = \boxed{\text{공제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1. 위 '지급공제금'은 피공제자 1인당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대인배상 I(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제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공제자의 공제금 청구

제18조(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공제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운전자신체사고」	피공제자가 피공제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공제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제19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 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공제조합이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④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공제자의 공제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배상」, 「운전자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공제조합은 피공제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 공제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0조(제출 서류)

피공제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제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운전자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1. 공제금 청구서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7.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II」 또는 공제 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 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8. 전손공제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9.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제21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공제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공제조합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공제 진료수가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공제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 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공제조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공제자에게 가지급

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공제조합은 이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공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공제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공제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공제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4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2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공제조합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공제자는 공제조합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공제조합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

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⑦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24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25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 공제 진료수가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공제조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4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공제금의 분담 등

제26조(공제금의 분담)

「대인배상」,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운전자신체사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금을 분담합니다.

1. 이 공제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공제조합(보험회사를 포함)에 가입된 자동차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공제계약의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공제계약에서 보상책임이 있는 피공제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7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공제금을 각 피공제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공제계약에서 공제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7조(공제조합의 대위)

- ① 공제조합이 피공제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공제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공제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운전자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공제자의 권리. 다만, 공제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피공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③ 피공제자는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8조(공제조합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① 공제조합은 이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공제조합이 공제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9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① 공제조합은 피공제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공제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공제조합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0조(공탁금의 대출)

공제조합이 제29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공제조합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공제계약의 성립

제31조(공제계약의 성립)

- ① 이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공제조합이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공제료(공제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공제료 전액(공제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공제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공제조합이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공제조합이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입증명서를 공제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공제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공제계약이 성립되면 공제조합은 제35조(공제기간)의 규정에 따라 공제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공제계약자로부터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약관 및 공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공제조합이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에게 약관 및 공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공제조합이 청약 시 공제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1)을 하지 않은 경우
- ④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공제조합은 이미 받은 공제료를 공제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

을 포함합니다.

제33조(설명서 교부 및 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공제조합은 계약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계약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공제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분 및 가입증명서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공제조합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공제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공제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공제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공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4조(청약의 철회)

- ① 공제계약자는 가입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에게 가입증명서를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공제조합이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공제기간이 90일 이내인 공제계약
-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공제조합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공제료를 공제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공제계약자가 공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⑦ 공제조합이 제4항의 공제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공제조합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35조(공제기간)

공제기간은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제36조(사고발생지역)

공제조합은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공제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공제계약자 등의 의무

제37조(계약 전 알릴 의무)

- ① 공제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공제조합에 알려야 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목적으로 운전자 명세에 기재된 운전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기명피공제자를 위해 피공제자동차로 배달대행 업무를 하는 자로서 운전자 명세에 기재된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에 관한 사항
 2. 피공제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에 관한 사항과 이 공제계약을 제외한 피공제자동차에 적용되는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제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공제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공제조합은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 공제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공제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44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공제료가 변경되는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44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공제자를 위해 피공제자동차로 배달대행 업무를 하는 자로서 운전자 명세에 기재된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사실
 2. 피공제자동차 또는 피공제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사실
 3. 가정용(또는 업무용) 및 기타용도나 비유상운송 배달용「의무공제(의무보험을 포함)」에 가입한 자동차공제(자동차보험을 포함)의 피공제자동차 용도가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으로 변경된 경우, 그 사실
 4.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공제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② 공제계약자는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공제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 ①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책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

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공제조합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공제조합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공제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5. 공제조합이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조합이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공제계약의 변동 및 공제료의 환급

제40조(공제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공제계약자는 업체의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를 변경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 변경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가입증명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공제료가 변경된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료를 반환하거나 추가공제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1조(공제계약의 취소)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사기에 의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2조(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공제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43조(공제계약자의 공제계약 해지.해제)

① 공제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공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에서 공제계약자는 기명피공제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공제조합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조합은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제조합은 제45조(공제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4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 ① 공제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공제계약을 맺은 때에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공제계약자가 공제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공제조합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
 - 다.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맺은 날부터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 라. 공제계약을 모집한 자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공제를 모집한 자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마. 공제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공제조합이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공제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제3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공제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공제조합이 제3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3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따라 추가공제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계약자가 그 공제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공제조합이 3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나.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제3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4. 공제금의 청구에 관하여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공제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공제조합은 보상합니다.

제45조(공제료의 환급 등)

- ①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공제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공제료와 변경 후 공제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공제조합의 고의·과실로 공제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공제계약자가 적정공제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공제조합은 이를 안 날 또는 공제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공제조합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공제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 드립니다.
- ③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를 돌려 드립니다.
 - 1. 제32조 제3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공제조합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 2.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43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납입한 공제료에서 정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 3. 공제계약이 해지(제43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공제조합이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공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공제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⑤ 이 약관에 의해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가 낸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공제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⑥ 공제조합이 제5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공제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46조(약관의 해석)

- ① 공제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공제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공제조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7조(공제조합의 개인정보이용 및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 ① 공제조합은 제39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공제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제계약자와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운전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공제자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공제종목, 보장종목, 공제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공제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공제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48조(피공제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공제조합은 피공제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4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0조(분쟁의 조정)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1조(관할법원)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공제조합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52조(미 납입 공제료의 공제)

공제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공제료, 자기부담금 등이 미납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에게 지급될 금액 중 미 납입 공제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제53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 대인배상 | 지원금 특별약관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공제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장 레 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 자 료	<p>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p> <p>(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p> <p>(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p> <p>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p>
3. 상실수익액	<p>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만,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p>(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p> </div>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가) 산정대상기간</p> <p>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p> <p>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p> <p>(나) 산정방법</p> <p>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p> <p>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p> <p>가) 급여소득자</p> <p>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p>

항 목	지급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 <용어풀이>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p> <p>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 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p> <p>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p> </div> <p>나) 사업소득자</p> <p>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p> <p style="text-align: center;">— <산식>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text{연간수입액} - \text{주요경비} - (\text{연간수입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text{제세공과금}] \times \text{노무기여율} \times \text{투자비율}$ </div> <p>(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p> <p>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p> <p>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p> <p>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p> <p>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용어풀이>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이 공제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p> <p>② 이 공제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p> </div>

항 목	지급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p> </div> <p>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p> <p style="text-align: center;">〈용어풀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공제조합으로 제출한 것을 말함.</p> </div> <p>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p> <p>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p> <p>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p> <p>(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항 목	지급 기준								
	<p>(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생활비율: 1/3</p> <p>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p> <table border="1" data-bbox="411 1451 1382 1626"> <thead> <tr> <th>피해자의 나이</th> <th>취업가능월수</th> </tr> </thead> <tbody> <tr> <td>62세부터 67세 미만</td> <td>36월</td> </tr> <tr> <td>67세부터 76세 미만</td> <td>24월</td> </tr> <tr> <td>76세 이상</td> <td>12월</td> </tr> </tbody> </table> <p>(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나)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p>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항 목	지급 기준
	<p>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p> <p>(*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p> <p>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frac{1}{1+i} + \frac{1}{1+2i} + \dots + \frac{1}{1+ni}$ </div> <p>i=5/12%, n=취업가능월수</p>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p>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p> <p>(1) 입원료</p> <p>(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다)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2.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책임공제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만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00</td> <td>5</td> <td>75</td> <td>9</td> <td>25</td> <td>13</td> <td>15</td> </tr> <tr> <td>2</td> <td>176</td> <td>6</td> <td>50</td> <td>10</td> <td>20</td> <td>14</td> <td>15</td> </tr> <tr> <td>3</td> <td>152</td> <td>7</td> <td>40</td> <td>11</td> <td>20</td> <td></td> <td></td> </tr> <tr> <td>4</td> <td>128</td> <td>8</td> <td>30</td> <td>12</td> <td>15</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항 목	지급 기준
	<p>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공제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공제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p>
<p>3. 휴업손해</p>	<p>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p> <p style="text-align: center;">〈용어풀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 $1\text{일 수입감소액} \times \text{휴업일수} \times \frac{85}{100}$ </div> <p>나. 휴업일수의 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p>다. 수입감소액의 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p style="text-align: center;">〈용어풀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p> </div>

항 목	지급 기준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공제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공제조합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용어풀이〉</p> <p>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제조합이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p> </div>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공제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상해등급</th> <th style="width: 50%;">인정일수</th> </tr> </thead> <tbody> <tr> <td>1급~2급</td> <td>60일</td> </tr> <tr> <td>3급~4급</td> <td>30일</td> </tr> <tr> <td>5급</td> <td>15일</td> </tr> </tbody> </table>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4.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항 목	지급 기준
	<p>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p> <p>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p>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위 자 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p> <p>(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p> <p>(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p> <p>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p> <p>(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노동능력상실률</th> <th style="text-align: center;">인정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5% 이상 5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5% 이상 45%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7% 이상 35%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이상 27%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4% 이상 2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 이상 14%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 이상 9%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0 초과 5%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body> </table> <p>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p>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2. 상실수익액	<p>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p>																		

항 목	지급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공제금지급 일까지의 월수+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 는 호프만계수)</p> </div>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산정대상기간</p> <p style="padding-left: 40px;">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 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 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 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p> <p style="padding-left: 40px;">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 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 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산정방법</p> <p style="padding-left: 40px;">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2) 가사종사자</p> <p style="padding-left: 40px;">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3) 무직자(학생포함)</p> <p style="padding-left: 40px;">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p> <p style="padding-left: 40px;">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p> <p style="padding-left: 40px;">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6) 외국인</p> <p style="padding-left: 40px;">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다. 노동능력상실률</p> <p>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 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 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 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조합이 협 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라. 노동능력상실기간</p> <p style="padding-left: 20px;">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p> <p>마. 호프만 계수</p> <p style="padding-left: 20px;">사망한 경우와 동일</p>

항 목	지급 기준
3. 가정간호비	<p>가. 인정 대상</p> <p>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p> <p>(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p> <p>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p> <p>(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p> <p>(나) 자력으로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p> <p>(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p> <p>(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p> <p>(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p> <p>(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p> <p>(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p> <p>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p> <p>(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p> <p>(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p> <p>(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p> <p>나. 지급 기준</p> <p>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p>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 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p>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p> <p>(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p> <p>(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p>
2. 교환가액	<p>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p> <p>(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p> <p>(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p>
3. 대 차 료	<p>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대차를 하는 경우</p> <p>(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p>

항 목	지급 기준
	<p>자동차를 기준으로 함.</p> <p>(*)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하는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p> <p>(*)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p> <p>(*)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 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p> <p>(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p> <p>(*)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p> <p>(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p> <p>(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p> <p>(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p> <p>(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가능한 경우</p> <p>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p> <p>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p> <p>(*)“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p>
4. 휴 차 료	<p>가. 지급대상</p> <p>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p> <p>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p>

항 목	지급 기준
	<p>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가능한 경우</p> <p>(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p> <p>(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5. 영업손실	<p>가. 지급대상</p> <p>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p> <p>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p> <p>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인정기간</p> <p>(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p> <p>(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p>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p>가. 지급대상</p> <p>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p> <p>: 수리비용의 20%</p> <p>(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p> <p>: 수리비용의 15%</p> <p>(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p> <p>: 수리비용의 10%</p>
7. 견인비용	<p>가. 지급대상</p> <p>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p>

〈별표 3〉 과실상계 등

항 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공제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공제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p> <p>(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서 사망공제금, 부상공제금 및 후유장애공제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공제조합은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p> <p>(*)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p> <p>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p> <p>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p>
2. 손익상계	공제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공제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공제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가. 기왕증 ^(*) 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

항 목	지급 기준
	<p>(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p> <p>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p>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공제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별표 5〉 운전자신체사고 지급 기준

가. 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

상해등급	공제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급	8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3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4급	7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5급	500만원	1,000만원	1,650만원
6급	4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7급	250만원	500만원	800만원
8급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9급	140만원	280만원	450만원
10급	120만원	240만원	400만원
11급	120만원	200만원	300만원
12급	120만원	180만원	290만원
13급	80만원	130만원	210만원
14급	50만원	80만원	13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따릅니다.

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

등급	공제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에 따릅니다.

<부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급	3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 그래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좌창·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용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용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위팔뼈목 골절 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5급	9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기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위팔뼈 몸통 골절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노뼈 붓돌기 골절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11. 손목 손배뼈 골절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무릎뼈 골절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24. 발목발허리(리스포랑)관절 손상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18. 노뼈목 골절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종아리뼈 분리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빗장뼈) 골절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15. 손목 부위 손배뼈·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위팔뼈 위관절용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손허리뼈 골절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장뼈(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손가락관절 탈구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2.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손가락·발가락 편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공통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p> <p>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p> <p>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p> <p>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p> <p>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p>
머리	<p>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혈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p> <p>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p> <p>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p> <p>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p> <p>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p>

영역		내용
		<p>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p> <p>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p>
흉·복부		<p>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p>
척추		<p>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p> <p>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p>
팔·다리	공통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p> <p>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p> <p>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p> <p>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p> <p>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p> <p>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영역	내용
	<p>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p> <p>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p> <p>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p> <p>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 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항에 적용한다.</p> <p>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p> <p>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p> <p>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p>
팔	<p>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p> <p>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p> <p>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p> <p>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다리	<p>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p> <p>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p> <p>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p> <p>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p> <p>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p> <p>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p> <p>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p> <p>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p> <p>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p> <p>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p> <p>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5천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만 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천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만 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리스포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5급	9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0급	2,7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플랫폼 유상운송 ON-OFF 공제 특별약관

- 목 차 -

제1편 공제료 납입

제1절 공제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제2절 1일 정액제 특별약관

제2편 보장범위 변경

제1절 대인배상 I 지원금 특별약관

제2절 대인배상 일정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3절 외제차 충돌 우대보상 특별약관

제4절 운전자신체사고 보장 확대 특별약관

제5절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편 공제료 납입

제1절 공제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공제료의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

- ①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시기 이전에 공제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② 공제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서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료의 분할 납입주기 및 납입약정일
 2. 위 제1호에서 정한 약정일에 납입하는 예납공제료의 규모
 3. 위 제1호에서 정한 납입주기에 따른 공제료 정산일
 4. 기타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③ 공제조합은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시기 이후에 공제계약자와 협의를 통하여 위 제2항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공제료의 납부)

- ①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이 승인한 운전자의 규모 등에 따라 제시한 예납 공제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시기 이전에 공제조합에 납입해야 합니다.
- ② 공제계약자는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시기 이후에 공제조합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특별약관 제2조(공제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 제2항 제1호에서 약정한 납입약정일에 예상 공제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③ 공제조합은 이 특별약관 제2조(공제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 제2항 제1호에서 약정한 납입약정일의 5영업일 이전까지 공제계약자가 납부해야 하는 공제료를 알려드립니다.

제4조(공제료의 정산 등)

- ① 공제조합은 이 특별약관 제2조(공제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공제료정산일에 공제계약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산출된 공제료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3조(공제료의 납부)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납입한 예납 공제료의 일부 또는 전액이 공제계약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산출된 공제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제조합에 이 특별약관 제2조(공제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공제료정산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③ 공제조합은 이 특별약관 제2조(공제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 제2항 제3호에서 약정한 공제료정산일의 5영업일 이전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료를 공제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④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공제료의 납부) 및 제4조(공제료의 정산)에 따라 납입약정일 또는 공제료정산일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해당 예납공제료 또는 추가공제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배달대행 운행기록의 통보 등)

- ①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과 협의된 배달대행 운행 기록(*1)(이하 '배달대행 운행 기록')을 협의된 방식에 따라 매일 전자적인 정보로서 통보해야 합니다.
- ② 공제조합이 위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 및 전산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③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위 제1항의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제2항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공제조합이 이에 따라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통보되어 공제료가 정산된 배달대행운행 기록을 제외하고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라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공제조합과 협의된 배달대행 운행 기록'이란 공제조합이 공제료 정산 및 보상 등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로서, 공제계약 체결 시 까지 공제조합 및 공제계약자의 협의 하에 정합니다. 이 때의 '배달대행 운행 기록'은 피공제자가 배달대행 운행을 수행한 매일의 운행기록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공제자 본인의 성명과 운행 차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정보와 배달대행 운행의 시기 및 종기(배차요청 시간, 배달물 수령 장소 도착 시간, 배달물 인수완료 시간, 배달물 전달완료 시간, 배달 지연요청 시간 등을 포함), 운행지역, 운행거리 등 공제조합이 계약 유지 및 보상을 위해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제6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절 1일 정액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제2조(공제료의 계산)를 약정한 공제계약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공제료의 계산)

공제조합은 피공제자의 1일 운행시간이 「공제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의 특별약관정서에서 정의한 일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적용공제료를 공제조합에서 정한 1일 정액제 특약 공제료로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1일이란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개시시간부터 익일 종료시간까지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2편 보장범위 변경

제1절 대인배상 | 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가입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특별약관입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공제조합은 보통약관 배상책임에서 정한 피공제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위 제1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공제자동차의 의무공제(보험계약 포함)가 가입된 공제조합(보험회사 포함)이 이 특별약관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 I 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공제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공제조합(보험회사 포함)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보전하여 드립니다.

제3조(피공제자)

이 특별약관의 피공제자는 보통약관 제4조(피공제자)와 같습니다.

제4조(보상한도 및 지급공제금의 계산)

공제조합이 보상하는 손해액의 범위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로 합니다.

1. 보통약관의 공제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자연배상금 포함)
2. 피공제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다음의 비용으로 동 금액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 다. 그 밖에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피공제자동차가 자동차공제(보험계약 포함) 대인배상 I 이 없는 경우
- ② 피공제자가 음주, 마약·약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2절 대인배상 일정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에 가입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조합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피공제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공제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동차에 탑승한 동승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3절 외제차 충돌 우대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물배상」을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조합은 「대물배상」에서 공제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해 외제차(*1)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는 그 외제차의 손해배상에 한정하여, 「대물배상」 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사고유형별 공제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외제차'란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의해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제조되어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를 말하며,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외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해당 회사의 대한민국 내 자회사, 법인 포함)가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또는 조립) 완료한 자동차
2. 국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국내 자동차제조회사(해당 회사의 외국소재 자회사, 법인 포함)가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제조(또는 조립) 완료한 자동차
3. 위 '(1)'의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와 '(2)'의 국내 자동차제조회사가 기술제휴(공동설계, 공동판매)하여 제조 (또는 조립)한 자동차

<별표> 사고유형별 공제금 지급기준

사고유형 (피해물)	공제금 지급기준
외제차 단일사고(*2)	외제차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을 한도로 확대하여 보상
외제차 복합사고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외제차가 아닌 피해물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하고, 외제차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을 한도로 확대하여 보상

(*2) '외제차단일사고'란 하나의 대물사고 내에 외제차만 존재하는 사고를 말하며, '외제차복합사고'란 하나의 대물사고 내에 외제차와 외제차가 아닌 피해물이 모두 존재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사고당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공제금과 이 특별약관 공제금의 합계는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다음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외제차가 아닌 피해물에 발생한 손해

제4조(피공제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공제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4조(피공제자)'에서 열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4절 운전자신체사고 보장 확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운전자신체사고」를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공제조합은 「운전자신체사고」에서 공제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별표 5 운전자신체사고 지급기준'의 '가 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상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10급부터 14급까지의 상해까지 확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5절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공제조합은 피공제자가 피공제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공제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공제조합이 사고마다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은 기본형, 고급형의 상품으로 구분되며, 가입하신 상품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공제금 지급기준	지급기준	
		기본형	고급형
1. 사망형사합의금	피공제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	2,000만원 한도	3,000만원 한도
2. 상해형사합의금	다음의 사고로 피공제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 (단, 한 사고가 다음 ㉓와 ㉔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공제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㉓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이 특별약관의 <별표>에 해당하는 사고 ㉔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은 사고	상해 1~3급 : 1,000만원 한도 상해 4~7급 : 400만원 한도	상해 1~3급 : 3,000만원 한도 상해 4~7급 : 500만원 한도
3. 변호사선임비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실제로 든 비용을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 ㉓ 피공제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지식94)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 ㉔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여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㉕ 검사 또는 피공제자가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300만원 한도	500만원 한도
4. 벌금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	2,000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000만원 한도)	

- ③ 동일한 사고로 '②의 1., 2., 3., 4.'의 각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②의 1., 2., 3., 4.'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형사합의금과 상해형사합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사망형사합의금만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②의 1. 또는 2.'에서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공탁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 시에는 지급된 형사합의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⑤ 위 '②'의 1. 또는 2.'의 공제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형법 제 258조 제 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중상해 증명 서류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2.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3.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4. 그 밖에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류(형사합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⑥ 다음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위 '②'의 1) 또는 2)'의 공제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공제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공제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⑦ 위 '⑥'에 따라 공제조합이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공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관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공제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공제조합 양식)
 3.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표> '재2조의 ②, 2.' 관련사고

- ◇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 제2항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 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24조에 의한 건널목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

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3조(피공제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공제자는 보통약관 제4조(피공제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공제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공제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범죄를 목적으로 피공제자동차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피공제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피공제자가 피공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가 발생한 경우
 8. 피공제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9. 피공제자동차를 시험용(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피공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피공제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 영향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공제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공제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기명피공제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공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5조(대위)

공제조합은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사고로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공제조합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제6조(공제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의 사망형사합의금, 상해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공제금의 분담)에서의 다른 공제계약이나 보험계약의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